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년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 / 3

- | | |
|---|--------------------------|
| 3 | 1. 전반적인 규제장벽 완화 |
| 5 | 2. 선진국의 회색지대 강화 |
| 7 | 3. 신흥 경제국의 수입규제 강화 지속 전망 |

Ⅱ.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 8

- | | |
|----|-------------------|
| 8 |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
| 8 | 가. 총괄 |
| 11 |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39 | 2. 對韓 수입규제 전망 |
| 39 | 가. 총괄 |
| 40 |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첨부.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 72

요 약

I.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1. 전반적인 무역규제 장벽 완화

- '10 경기 회복세로 각국의 무역규제조치는 완화된 모습을 보임
 - '10년 1~6월간 세계적으로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는 69건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28건을 기록함.
 - 세이프가드 발동 역시 1~10월 간 10건을 기록, '09년 25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계관세도 1~6월간 5건을 기록하여 전년의 28건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함.

2. 선진국의 회색지대 강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보건위생,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타국제품의 진입을 억제하는 회색지대 강화 움직임이 뚜렷함.
 - 미국, 캐나다, EU 등은 화학첨가물, 식품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배기가스규제, 에너지 효율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회색지대 강화는 수입규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함

3. 신흥 경제국의 수입규제 강화 지속 전망

- '10년 경기회복으로 신흥국의 자국통화 강화,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각국 산업계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뚜렷해짐.
 -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업계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요청이 증가

II.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1. 개도국의 수입규제 여전

- '10.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2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전체 수입규제의 82%인 103건이 개도국의 조치임
- 126건 중 규제 중인 건은 106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 모두 포함)은 20건임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95건, 세이프가드 27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임
 - 반덤핑은 전년대비 2건, 세이프가드는 2건 증가하였으며 반덤핑/상계관세는 변동 없음.

2. 신규제소 역시 개도국이 주도

- 작년 한국산 제품에 총 17건의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모두 개도국發 조사로 나타남.
 - 인도(4건), 인도네시아(4건), 브라질(3건) 등 신흥 경제국의 규제움직임 활발

3. 철강, 화학, 자동차와 부품 등 주력수출 품목에 견제 지속 전망

- 미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자국 산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 화학,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상기 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만큼 급격한 수출 증가와 가격 조정에 유의해야 함.

I.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1. 세계적인 규제 장벽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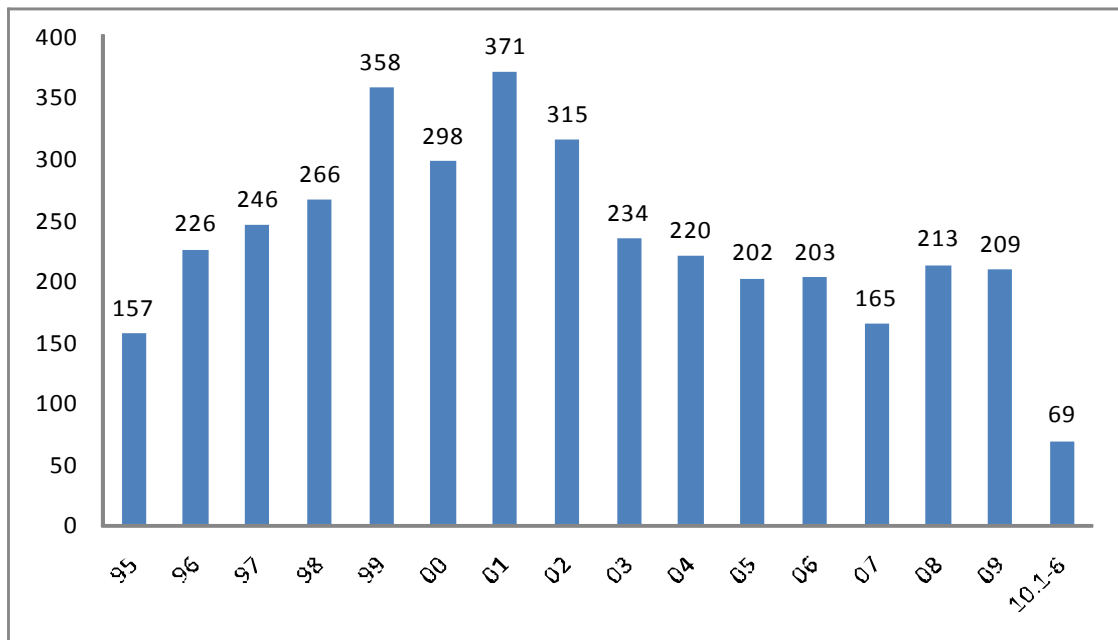
□ 무역규제 조치 증가세 둔화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면서 무역규제 조치 역시 완화된 모습을 보임.

□ 반덤핑 규제

- 2010년 1~6월 중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는 69건을 기록
 - 전년 같은 기간의 97건에 비해 28건(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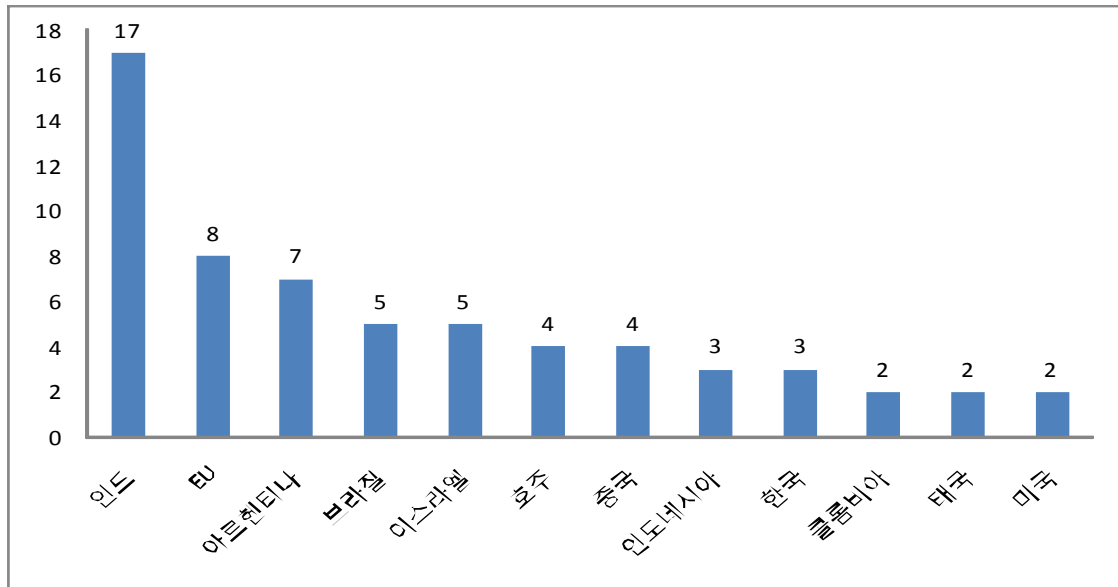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95 ~ '10.6)〉



자료 : WTO

- 주요 제소국은 인도, EU, 브라질, 이스라엘, 호주, 중국 등임
 - 상반기 반덤핑 조사개시 69건 중 65%인 45 건이 개도국發 조사임.

〈주요 반덤핑 조사개시 국가 및 개시건수 ('10.1 ~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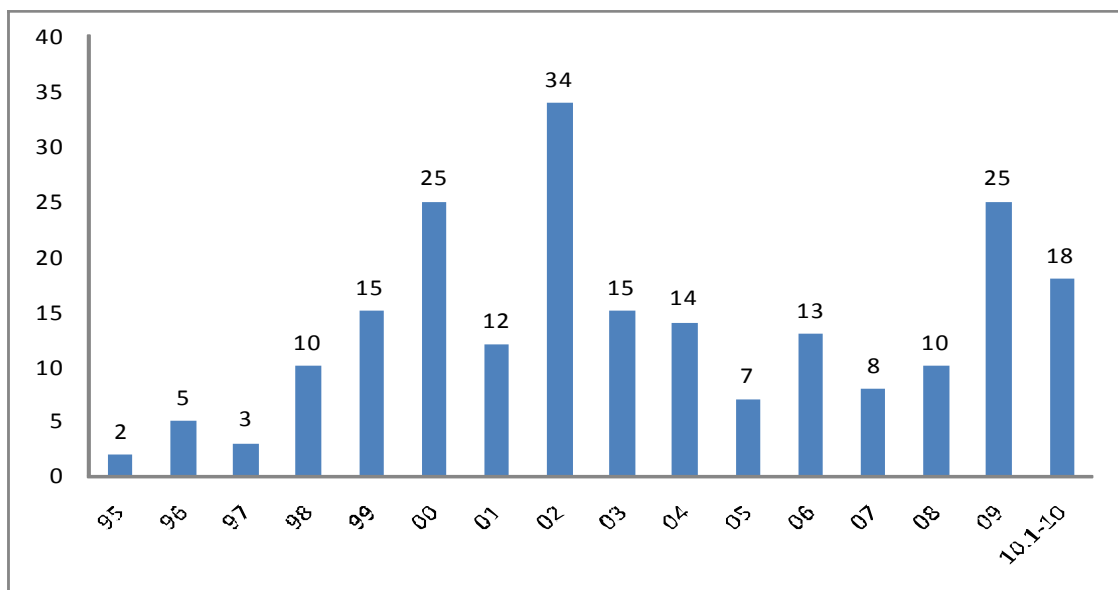


자료 : WTO

□ 세이프가드 규제

- '10년 1~10월 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18건으로, '09년 연간 25건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추이 ('95 ~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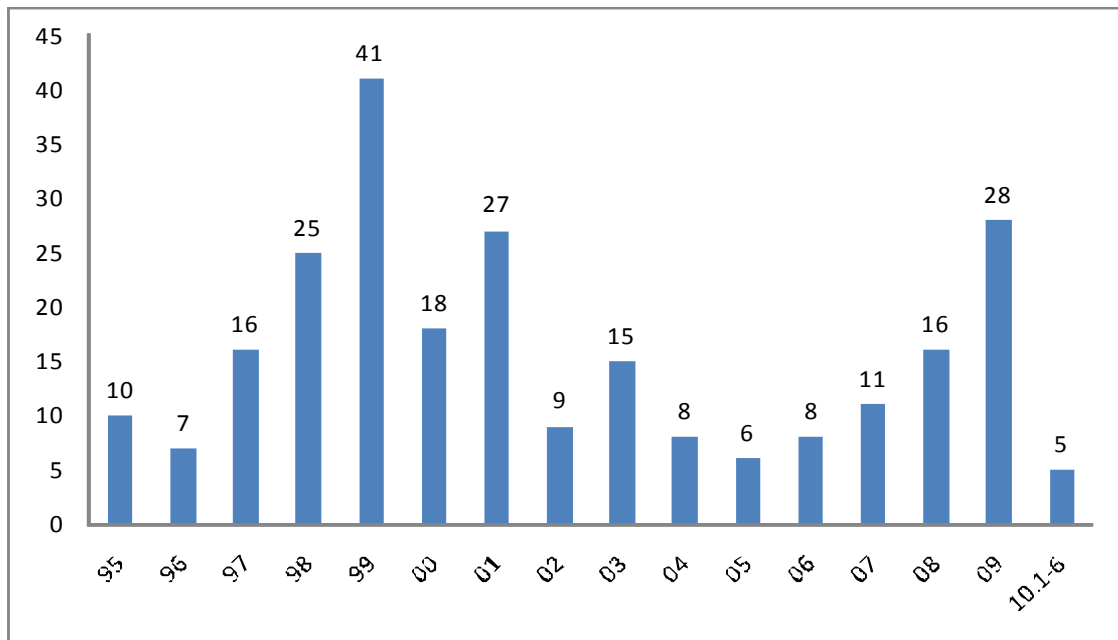
자료 : WTO

- 2010년 주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국가는 인도네시아(7건), 우크라이나(3건), 도미니카(공)(2건), 에콰도르(1건), EU(1건) 등임

□ 상계관세

- '10.1~6월 중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은 5건으로, 전년 28건에 비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세계 상계관세 조사개시 추이 ('95 ~ '10.6)〉



자료 : WTO

2. 선진국의 회색지대 강화

□ 보건위생,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한 회색지대 짙어져

- 선진국은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보건위생, 환경 우회적인 방법으로 타국산 제품의 진입을 막는 회색지대를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 캐나다, EU는 화학 첨가물, 식품 등 보건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캐나다는 10월부터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세계 최초로 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함. 캐나다에 이어 프랑스, 덴마크, 미국도 비스페놀 A의 독성물질 규제에 동참함.
- 캐나다는 또한 11월부터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외 입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0.009%의 허용수치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임.
- 미국은 식품안전법안을 개정하여 미 식품의약안전청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함.
- EU는 지난 '10년 6월 18일 기존의 유독성물질규정인 REACH에 신규 물질 8개를 추가하여 총 38개 화학물질을 규제 중임. 2011년부터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화학청에 통보해야 함.

○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환경규제도 강화

-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는 2011년 식 자동차 모델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실시함
- EU는 에너지 라벨규정을 강화하여 11월 30일부터 TV의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기존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었던 에너지 효율등급의 최고수준을 A에서 A+, A++, A+++ 까지 확대하여 기준을 강화함.

○ 탄소세 도입 논의는 축소 예상

-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탄소세는 EU 집행위가 보호무역 강화우려가 있다며 논의에 제동을 걸었음. 미국 역시 중간선거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탄소세 논의 등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의 회색지대 강화에도 유의해야

- 개도국도 자국 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수입제품의 인증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 인도네시아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제품라벨 강제규정'을 시행하고 자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부착을 의무화 함.
- 말레이시아도 자국 내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인증(Certificate of Approve)을 요구함.

3. 신흥 경제국의 수입규제 강화 지속 전망

□ 신흥국 보호무역기조 유지 예상

- 2010년 들어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신흥 경제국은 국내수요 증가, 자국통화 강세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
- 수입증가와 더불어 산업계의 보호요청이 강해짐에 따라 2011년에는 수입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 남아공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수입액이 전년대비 56% 가량 증가하면서 펌프, 제지, 철강관 등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제기됨.
 - 러시아는 2009년 350개 제품군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섬유, 철강 산업계의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등 규제강화를 요구함.
 - 브라질의 경우 헤알화 대비 달러의 환율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1~10월 간 수입이 43.8% 증가한 바 있으며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등 수입규제 조치 강화의 우려가 있음.

II.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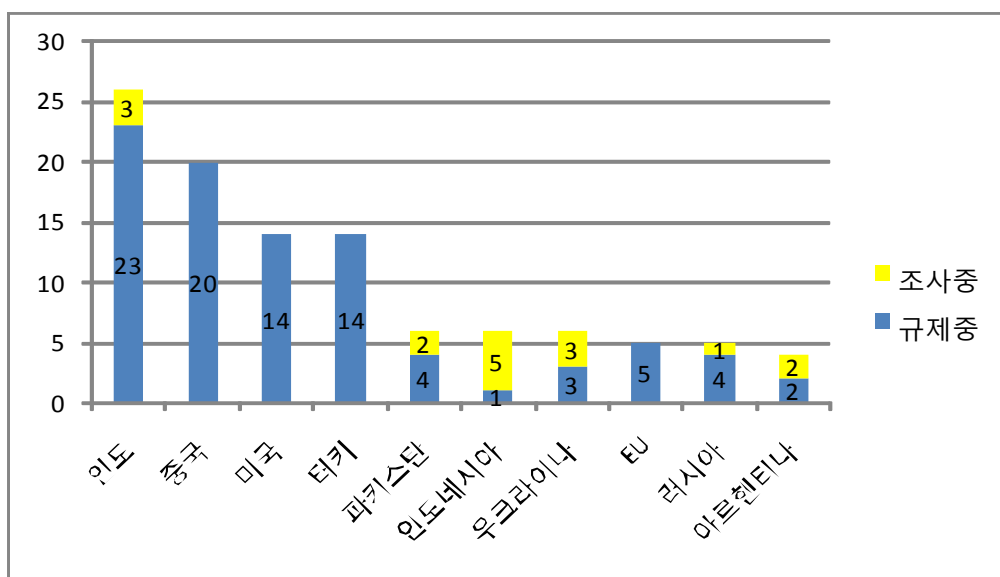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가. 총괄

□ 개도국의 對韓 수입규제 여전

- '10.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2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전체 규제의 82%인 103건이 개도국의 조치임
 - 개도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와 더불어 개도국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126건 중 규제 중인 건은 106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 모두 포함)은 20건임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95건, 세이프가드 27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임

〈주요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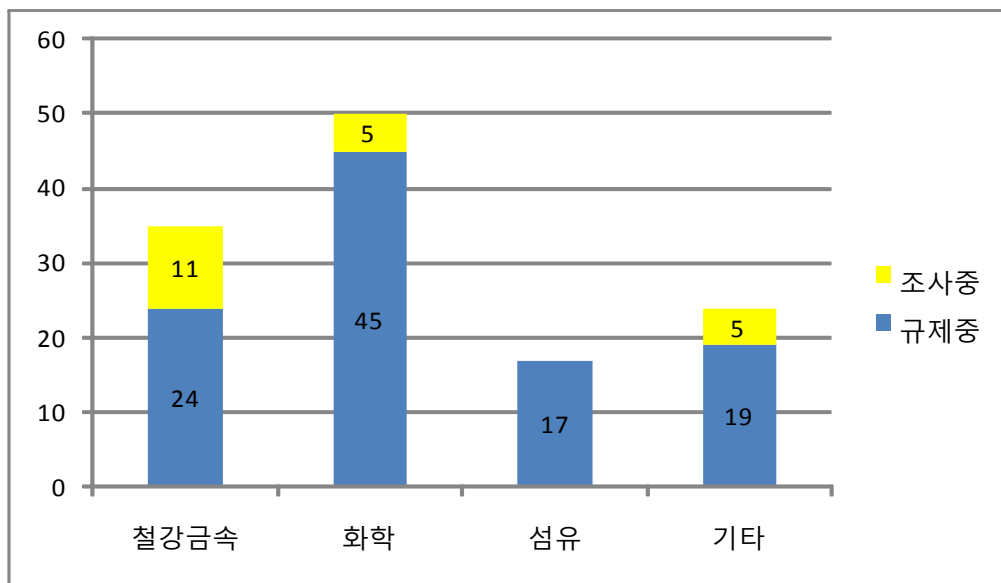
□ 인도, 중국이 최대 규제국가

- 국가별로는 인도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20건, 미국과 터키가 14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6건 순

□ 화학제품 규제가 가장 심해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 및 금속 35건, 섬유 17건 등임
- 화학제품은 인도(18건), 중국(17건)이, 철강 및 금속은 미국(10건)이, 섬유는 터키(6건), 인도(3건)가 주요 규제국가

〈품목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 신규 피소는 개도국이 주도

- '10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건수는 17건으로, 모두 개도국으로부터의 피소임.

〈연도/국가 유형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신규피소건수	28	15	11	11	15	23	17
선진국發	10	3	4	3	2	1	0
개도국發 (비중)	18 64.3%	12 80.0%	7 63.6%	8 72.7%	13 86.7%	22 95.7%	17 100%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건, 화학 5건, 기타 4건 등임
- 제소국은 6개국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4건, 우크라이나와 브라질이 각각 3건, 아르헨티나가 2건, 필리핀 1건 임.

〈2010년 신규 피소 현황〉

	국가	피소품목	조사개시	유형	비고
1	브라질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0.8.26	반덤핑	조사 중
2	브라질	니트릴 고무	10.10.1	반덤핑	조사 중
3	브라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10.6.1	반덤핑	조사 중
4	아르헨티나	종이 롤	10.12.10	반덤핑	조사 중
5	아르헨티나	에어컨	10.2.16	반덤핑	조사 중
6	우크라이나	합금철	10.2.17	세이프가드	11년 1월 판정 예정
7	우크라이나	광물성 비료	10.2.3	세이프가드	10년 12월 판정 예정
8	우크라이나	냉장/냉동고	10.5.6	세이프가드	11년 1월 판정 예정
9	인도	PVC 페이스트	10.2	반덤핑	10년 6월 예비판정
10	인도	스테인리스 열연강	10.4	반덤핑	조사 중
11	인도	폴리프로필렌	10.7	반덤핑	조사 중
12	인도	스테인리스 냉연강	10.8	반덤핑	조사 중
13	인도네시아	기타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10.4.30	세이프가드	조사 중
14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강제연선, 로프 및 케이블	10.2.5	세이프가드	조사 중
15	인도네시아	아연도강선	10.1.21	세이프가드	조사 중
16	인도네시아	비도금강선	10.1.19	세이프가드	조사 중
17	필리핀	판지(Testliner Board)	10.5.25	세이프가드	'10.11.24, MT 당 US\$ 29.8 부과 결정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남아프리카 공화국]

□ 수입규제 내역

-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2), 제지(1) 가 규제를 받고 있음.
-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명시적 수입규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유통업체의 HS 품목 세분류를 문제 삼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현상을 보임(LG TV, 타타대우 덤프트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7.8 (일몰제심)	'09.2	- 반덤핑 관세율 : 79.76% - '07.8.28 종료예정 - KIS Wire(무협의), DSR제강 - '08.08.17 일몰제심 잠정결과 발표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3907.60	반덤핑	'10.7 (일몰제심)	-	- 반덤핑관세율 : 19.7% - 대상업체 : SK케미컬, 고합, 휴비스 - 5년간 관세부과
백상지	4810.92	반덤핑	'05.8	'06.12	- '06.2.24 잠정관세율 : 38% - '06. 12월 최종판결 : 관세율 23.0% - 대상업체 : 한솔제지, 대한펄프
Lysine	4810.92	세이프가드	'07.5	'07.12	- 대상업체 : Lysine 제품생산·수출 업체 일부 개도국 제외 관세부과 종료(11.28)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

[러시아]

□ 수입규제 내역

-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1건의 반덤핑 규제와 4건(조사 중 1건 포함)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4), 섬유(1) 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니켈 함유 테인레스 평판압연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7219 11/21/22/23 /24/31/32/33 /34/35/90 7220 11/12/20/90	반덤핑	'09.3.27	'10.11.12	- '09.3.25 러연방 산업통상부 명령 No.189에 의해 조사 개시. - 2010년 11월 12일 반덤핑관세 부과 (3년간) 한국 : 포스코 48%, 대명 TMS Co., LTD 및 태한 SD CO., Ltd 를 포함한 기타 생산자 62.8%
스테인레스 강관 (Stainless pipes)	7304 11/41/49 7306 11/40	세이프 가드	'07.12.13	'09.9.11	-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에 대한 법령[2009.1.9]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9개월 동안 5%에서 15%~20%로 인상. - 2009년 9월 28일 정부 채택 법령 No. 758에 의해 비철금속 스테인리스 파이프 29개 종류에 28.1% 특별수입관세를 추가로 도입. 지정된 HS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적용될 것이며 2009년 11월 2일 부터 3년간 유효.
잠금장치 및 부속구 (Fasteners and fittings)	7318 15/16/21	세이프 가드	'09.5.14	조사 중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9년 5월 14일 명령 No. 393에 의해 조사 개시. - 러연방 통상산업부 장관에 의해 2010년 5월 24일 연구보고서 결과발표. - 자동차 Fastener를 제외하고 3년간 11.6%(톤당 2824달러 이상) 수입세의 부과를 제안함.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레스 식기류 (Tableware of Stainless Steel)	8211 91 300 0 8215 99 100 0 8215 20 100 0	세이프 가드	'08.04.04	'09.11.23	- 2009년 11월 23일 발효된 러 연방 법령 943호에 따르면 3년 짜리 특별 수입 관세는 1kg 당 USD 1.4로 책정되었고, 2009년 12월 27일부터 실시. - 수입 관세는 벨로루시 및 중국 을 제외(홍콩, 대만, 마카오 포 함)한 개도국 산 강철 식기류에 는 미적용
유리섬유 (Fiberglass)	7019 19/31/32/ 39/40/51/52/59/ 90	세이프 가드	06.10.21	'07.11.06	- 러 연방 법령 No. 757(2007. 11.6) '러시아 유리섬유 생산자 보호 조치' 발표 -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명령 No. 518(2007.11.29), 유리섬유에 대 해 3년간 특별 관세를 도입, 2010년 12월 10일까지 중국, 한 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에서 러 시아로 수입되는 연마재용 유 리섬유는 14.2%의 특별 관세를, 그 이외의 유리섬유의 경우 33.4%의 특별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 수입규제 내역

- 대 말레이시아 규제 품목은 인쇄용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2003.1.16	- 예비판정 : 2003.5.29 - 최종판정 : 2003.9.26 - 시한 : 2014.3.18	- 한국 43.24%

[멕시코]

□ 수입규제 내역

- 현재 1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09.11	○ 관세율 (2013.8.20 까지) - 삼양사 제조, 수출 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참고 - 일반관세 9%

[미국]

□ 수입규제 내역

- '10. 12월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14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0건, 화학 2건, 섬유 1건, 기계 1건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금속제 주방용품	7323.93 9604.00	반덤핑/ 상계관세	'86.1.31	'87.1.20	○ '05.9.27 2차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판정 - 범구 31.23%, 대성 6.11%, 해동 12.14%, 경동 8.36%, 남일금속 0.75%, 기타 8.1% - 상계관세 0.77%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필름	3920.62/63/69	반덤핑	'90.4.27	'91.4.15	○ '05.10.20일부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SKC Ltd. SKC America 13.92%, 기타 21.50% ○ '08.5.8 상황변동재심 최종판정 결과(정정) - 코오롱 1.53% → 1.52% ○ '10.11.19일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코오롱 미소마진(0.28%)판정
스탠다드 강관	7306.30	반덤핑	'91.10.4	'92.11.2	○ '06.8.8일부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현대강관 6.86%, 한국종합철관 6.21%, 마산철강 11.63%, 세아제강 4.91%, 기타 6.37% ○ '10.6.21일부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세아제강 3.28%, 동부제강 3.28%, 한국철강 3.28%, 유니온스틸 3.28%, 넥스틸 3.28%, 아주베스틸 3.28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7306.40	반덤핑	'91.11.1	'92.12.30	○ '06.9.11일부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세아제강 2.67%, 삼미금속 7.92%, 기타 7% ○ '09.6.30일부 연례재심 최종판정 - 세아제강 9.05% ○ '10.1.7일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세아제강 5.15%, 기타 7.0%
철강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7210, 7212, 7215, 7217류	반덤핑/상계관세	'92.7.20	상계관세: '93.8.17 반덤핑: '93.8.19	○ '07.2.14 일부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0.3.22일부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현대하이스코 3.29%, 포스코 0.01%/미소마진, 유니온스틸 14.01%, LG화학, 헤원엠에스씨, 동부제강 8.65% ○ '10.9.14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 반덤핑관세: 현대하이스코 0.22%/미소마진, 포스코 0.04%/미소마진, 유니온스틸 2.27%, 동부스틸 3.89%, LG화학, 헤원엠에스씨, LG하우시스, 동국 3.08% - 상계관세: 현대하이스코 0.07%/미소마진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리스 선재	722100.05, 15, 30, 45, 75	반덤핑	'97.8.26	'98.9.15	○ '07.8.16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창원특수강(現 포스코특수강), 동방산업 및 계열사에 모두 28.44% ○ '09.7.1일자로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공고(상무부) ○ '10.6.17일자로 반덤핑 규제 지속 결정 공고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코일	7219.1100/ 1200	반덤핑	'98.4.27	'99.5.21	○ '05.7.18일부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지속판정 - 포스코 6.08%, 기타 6.08%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7219.13/14/ 31/32/33/34 /35/90, 7220.12 /20/90	반덤핑/ 상계관세	'98.6.30	반덤핑: '99.7.27 상계관세: '99.8.6	○ '05.7.25일부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판정 - 반덤핑 관세: 포스코 2.49%, 대한금속 58.79%, 대양 5.44% 기타 2.49% - 상계관세: INI/BNG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 '10.9.7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개시 ○ '10.6.2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 '10.11.2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포스코 6.08%, 대한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6.08%
철강후판	7208.40/51/ 52/53/90, 7210.70/90, 7211.13/14/ 90, 7212.40/ 50, 7225.40/ 50/99, 7226.91	반덤핑/ 상계관세	'99.3.16	'99.12.14	○ '08.3.19일부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 동국제강 0.29%(미소판정) ○ '08.3.21일부 반덤핑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 동국제강 1.97%, 태창 32.70% ○ '09.9.24일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효성, 현대미포, 정우 32.70% ○ '10.3.5일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효성, 현대미포조선, 정우산기 32.7% ○ '10.11.1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시행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 에스테르 단섬유사 (PSF)	5503.2	반덤핑	'99.4.30	'00.5.25	○ '06.4.3일부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모든 한국기업 7.9% ○ '08.12.5일부 연례재심 최종판정 휴비스 2.92% ○ '10.10.19일부 연례재심 최종판정 휴비스 0.94%
폴리 염화비닐 (PVA)	3905.30	반덤핑	'02.9.26	'03.10.1	○ 동양제철화학 38.74%, 기타 32.08% ○ '09.4.13일부로 일몰재심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PC강선	7312.10.1099	반덤핑	'03.2.27	'04.1.28	○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 '09.12.11일부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연벽사각 파이프	7306.61.50.00 / 7306.61.70.60	반덤핑	'07.6.28	'08.8.5	○ 넥스틸 0.92%(미소마진), 동아/진방/유진/아신/한겨래/국제 30.66%, 세아 15.79%, 기타 15.79%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8202.39	반덤핑	'05.5.3	'09.11.4 (09.1.23 소급적용)	○ 이화 다이아몬드 12.76%, 신한 다이아몬드 26.55%, 효성 다이아몬드 6.43%, 기타 16.39% ○ '10.03.24일부로 반덤핑 부과 최종판정 정정 - 이화다이아몬드 8.80%, 신한다이아몬드 16.88%, 효성다이아몬드 6.43%, 기타 업체 11.10%

[브라질]

☐ 수입규제 내역

○ 반덤핑 조치가 적용 중인 품목은 PVC 한 품목임.

- 브라질 석유 화학 제품 분야 선두 기업인 Braskem사가 중국산 및 한국산 PVC를 덤핑 혐의로 제소함. 2007년 9월 21일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 조사 시작을 공식 발표하고 1년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2008년 8월 28일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림.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3904.10.10	반덤핑 관세	'07.9.21	'08.8.28	○ '08.8.28 중국 및 한국산 PVC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적용 결정 ○ 한국산 규제 내용 - 2.7% : LG 화학 - 18.9% : 한화 화학을 제외한 여타 업체

자료원 : MDIC(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현재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후판), 니트릴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등 총 3건임.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비고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후판)	7208.51.00 7208.52.00	반덤핑혐의 조사 중	2010.8.26	제조업체 : Usiminas 피소국 : 한국, 북한, 스페인,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대만, 터키
니트릴 고무	4002.59.00	반덤핑혐의 조사 중	2010.10.01	제조업체 : Nitriflex Indústria e Comércio S.A. 피소국 : 한국,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인도, 폴란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4002.19.19	반덤핑혐의 조사 중	2010.06.01	제조업체 : Lanxess Elastômeros do Brasil S.A. 피소국 : 한국

자료원: MDIC(통상개발산업부)

[아르헨티나]

□ 수입규제 내역

- 아르헨티나는 12.3일 현재 중국산과 브라질산 품목 위주로 총 54건의 반덤핑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현재 2건이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18, 25-28, 90, 7211.23, 7225.50, 7226.92	반덤핑	'01.07.18	'03.01.08	- 관세율 : 60.46% - 규제기간 : 행정령 242로 인해 현재 덤핑 재조사에 들어감. 재조사기간 동안 수입규제 적용. - 조사종료 2011년 7월로 예정.
아연강판	7210.49, 61, 7212.30, 50, 7225.92,99, 7226.94,99	반덤핑	'02.05.29	'03.05.23	- 관세율 : 최소가를 규정함. 한국산 U\$ 243/톤 - 규제기간 : 연장('09.11.20~'12.11.19)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현재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종이를, 에어컨 등 총 2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비고
종이롤 (Paper Rolls)	4810.13.89, 4810.13.90, 4810.19.89, 4810.19.90	반덤핑혐의 조사 중	2010.12.10	제소업체 : LEDESMA S.A.A.I. 피소국 : 한국, 미국, 핀란드, 오 스트리아, 중국
에어컨 (air conditioning equipment 용량 6,500 BTU 이하)	8415	반덤핑혐의 조사 중	2010.2.16	피소국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 수입규제 내역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5건(조사 중 3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2(조사 중 1), 섬유 1, 화학 1(조사 중), 가전 1(조사 중), 기타 1 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철강파이프	7304291100	세이프 가드		'08.7.23	- 조치종류 : 수입쿼터 - 적용기간 : '08.1.10-'11.9.30(3년) - 연차별 쿼터량 · 1년차 : 연간 14,504톤 · 2년차 : 연간 15,230톤 · 3년차 : 연간 15,955톤
성냥	3605	세이프 가드	'08.11.26	'09.9.29	- 특별관세 세율 : 11.3% - 적용기간 : '09.11-'12.11월
파일편물	6001	반덤핑	'08.5.29	'09.6.6	○ 세율 - 한국산 27.99%, 중국산 140% ○ 적용기간 : '09.7.6~'10.4.7.5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세율인 140%가 적용
합금철	7202118000 7202300000	세이프 가드	'10.2.17	조사중	- 2011년 1월 최종판정 예정
광물성 비료	3105	세이프 가드	'10.2.3	조사중	- 2010년 12월 최종판정 예정
냉장/냉동고	8418	세이프 가드	'10.5.6	조사중	- 2011년 1월 최종판정 예정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조치종료 : 5개 품목 (세이프가드)

- Tricot Fabrics, Cotton Fabrics, Ruberoid, Lamp, 플로트유리

○ 조사종료 : 1개 품목

- 액체염소(Liquid Chlorine) : 무혐의 판정

[이집트]

□ 수입규제 내역

- 현재 화학제품에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진행 중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DOP (Diocetyl Phthalte)	2917.32	반덤핑	'06.9.21	'07.7.1	2007.7.1~2012.6.30까지 5년간 톤당 US\$ 109 반덤핑 관세 부과 원산지 한국산 제품 모두 해당

[인도]

□ 수입규제 내역

-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총 26건임 (세이프가드 2건, 반덤핑 24건)
 - 인도의 대한민국 반덤핑 제재 또한 화학 및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전자제품, 화학섬유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2010년 4건 조사개시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건수는 2007년 8건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이를 보였음. (2010년 실효 제재 건수는 2009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중간에 무혐의 처리로 조사 종결된 1건을 포함하면 2009년과 2010년 모두 연간 4건씩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 최근 1년 내 폴리계열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각 2건 대상으로 조사 개시
 - 2월부터 9월 중 8개월 기간 동안 4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중 두 건은 폴리계열 플라스틱 제품이고, 나머지는 열연강 및 냉연강 철강 제품 각 1건임.

- 열연강제품의 경우, 동일 HS 코드내 하위 품목이 2009년 11월 중 반덤핑 확정 판정이 나면서 2009-10 회계연도 중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은 최소 50%에서 최고 1200% 수준까지 증가한 품목들임. (열연강 제품은 5개월간의 반덤핑 제재로 2009~10 회계연도 중 수입액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반덤핑 제재 효과가 여실히 나타나는 사례임.)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연 번	HS 코드	품목명	조사 개시	반덤핑 판정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1	5402.43	Fully Drawnor Fully Oriented Yarn Spin Draw Yarn Flat Yarn of Polyester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기타단사)	2005년 6월	2006년 12월	US\$64/MT(효성 자체 생산품 직수출 경우), US\$588/MT(생산자 이외 수출자가 수출한 경우) HK 생산품 직수출건은 가격인상약속으로 반덤핑 제외, 새한, 휴비스 직수출건은 반덤핑 제외	HK Corporation, 효성, 웅진케미컬 (구 새한), 휴비스 Corporation
2	3904.21	Poly Vinyl Chloride (PVC) - Suspension Grade(PVC 서스펜션)	2006년 6월	2007년 12월	Rs.1984/MT(LG, 한화 생산자 직수출건 제외한 모든 케이스)	LG화학, 한화석유화학
3	37013000 37040090 37051000 76069190 76069290	Presensitised Positive Offset Aluminum plates (오프셋복사용 알루미늄판)	2006년 8월	2007년 8월	US\$5.682954/Kg	전체
4	550330	Acrylic Fibre (아크릴섬유)	2007년 10월	2008년 10월	Rs.22.27/Kg	전체
5	400259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N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2007년 10월 (일몰 재심)	2008년 10월	US\$38.73/MT (LG, 금호 직수출건), US\$362.75/MT (LG, 금호 이외 수출기업)	LG화학, 금호석유화학(비고 : LG, 금호는 조사에 협조, 반덤핑관세 경감)
6	281511 281512	Caustic Soda (가성소다)	2007년 11월 (일몰 재심)	2008년 11월	US\$401.05/DMT (한화석유화학 제품 직수출 또는 Tricon Energy를 통한 수출 품 이외)	한화석유화학, Tricon Energy (비고 : 한화, Tricon는 조사에 협조, 반덤핑관세 경감)

연 번	HS 코드	품목명	조사 개시	반덤핑 판정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7	290711 270760	Phenol (페놀)	2007년 1월	2008년 1월	US\$196/MT	전체
8	29141100	Acetone (아세톤)	2007년 2월	2008년 5월	US\$67.33/MT	전체
9	28470000	Hydrogen Peroxide imports(과산화수소)	2007년 7월	2008년 7월	Rs.23,082/MT	전체
10	2902 2907 2909 2917 2921 2921 2930 2933 2934 2935 2942 3811 3812 3815	Rubber Chemicals [MBT CBS TDQ PVI TMT PX 13 6PPD] (석유화학 첨가제류)	2007년 7월	2008년 1월	Rs.10.35/Kg(금호 자체 생산품 직수출건), Rs.11.31(금호 직수출건 제외한 모든 수출건)	금호석유화학
11	85239050	Compact Disc Recordable (CDR)	2007년 9월	2009년 3월	US\$53.38/pc	전체
12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스테인레스 냉연강)	2008년 11월	2009년 11월	US\$148.05/MT(Posco생 산-Posteel수출), US\$96.70/MT(Posco 생산-삼성물산 수출), US\$210.93/MT(Posco 생산-현대종합상사 수출), US\$234.98/MT(Posco 생산- SK네트웍스 수출), US\$74.88/MT(Posco 생산- LG상사 수출), US\$62.61/MT(Posco 생산-대우인터내셔널 수출), US\$922.34~1364.00/MT (Posco이외 생산-기타 기업 수출)	POSCO, POSTEEL,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네트웍스, LG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연 번	HS 코드	품목명	조사 개시	반덤핑 판정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13	72092020	Phosphoric Acid of all grades and all concentrations excluding Agriculture Fertilizer Grade(인산)	2008년 11월	2009년 11월	US\$221.64/MT	전체
14	28311001 28321002 283110	Sodium Hydrosulphite (차아황산소다)	2008년 3월 (일몰 재심)	2009년 3월	US\$1,034.76/MT	전체
15	28364000	Potassium Carbonate (탄산칼륨)	2008년 5월 (일몰 재심)	2009년 5월	US\$9.45/MT(UNID 생산, OCI Corp 또는 UNID 수출), US\$123.86/MT(상기 이외 케이스)	UNIC, OCI Corp.
16	390720 390799 390791	Flexible Slabstock Polyol (유성판재폴리올)	2008년 7월 (일몰 재심)	2009년 7월	US\$2,601/MT	전체
17	540210	Nylon Filament Yarn (나일론필라멘트사)	2008년 8월 (중간 재심)	2010년 2월	Rs.23.74/Kg (태광실업 생산 및 직수출), RS.44.96/Kg (효성 생산 및 직수출), Rs.51.94/Kg(효성, 태광 이외 수출), Rs.77.93/Kg(한국산 제품, 중국·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한국 이외 국가 수출)	태광실업, 효성
18	854011	Cathode Ray Colour Television Picture Tubes (TV 음극선관)	2007년 9월	2009년 2월	Rs.1,148/pc(15") Rs.1,822/pc(21") Rs.3,858/pc(29" 이상) (LG필립스 생산 및 수출), Rs.1,422/pc(14") Rs.1,953/pc(15") Rs.2,282/pc(21") Rs.4,369/pc(29" 이상) (LG필립스의 한국산 수출)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비고 : LG는 조사에 협조, 반덤핑관세 경감)

연 번	HS 코드	품목명	조사 개시	반덤핑 판정	반덤핑 관세	관련기업
19	390390 400219	Styrene Butadiene Rubber SBR (스타리엔 부타디엔 고무)	2009년 3월 (일몰 재심)	2010년 6월	US\$0.0689/Kg	전체
20	29053200	Propylene Glycol (프로필렌글리콜)	2009년 3월 (일몰 재심)	2010년 6월	US\$1,221.38/MT	전체
21	3904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PVC Paste (PVC 페이스트)	2010년 2월	2010년 6월 (예비)	US\$89.18/MT (한화 석유화학 생산 및 직수출), US\$266.52/MT (한화 석유화학 및 LG화학 생산 및 직수출 건 제외 모든 수출), LG화학 생산 및 직수출건은 해당없음.	한화석유화학, LG화학
22	7219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 열연강)	2010년 4월	조사 중	-	-
23	3902	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	2010년 7월	조사 중	-	-
24	7220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 mm (스테인레스 냉연강)	2010년 8월	조사 중	-	-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세이프가드)〉

연번	HS 코드	품목명	조사 개시	세이프가드 판정	긴급수입관세
1	291735	무스프탈산 (Phthalic Anhydride)	'08.11월	'09.5월	초회연도 : 29%(2009.1.29~) 2차연도 : 20%(2010.1.29~) 3차연도 : 15%(2011.1.29~)
2	290513 29051490	옥소 알콜 (OxoAlcohols)	'09.1월	'09.5월	초회연도 : 10% 2차연도 : 7.5% 3차연도 : 5%

[인도네시아]

□ 수입규제 내역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2건(조사 중 1건), 세이프가드 4건(조사 중 4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5(조사 중 5), 제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비코팅인쇄용지	4802	반덤핑	'03.2.10	'04.12.10	- 한국의 모든 생산 및 수출자 대상 59.64%
기타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7312.10.90	세이프가드	'10.4.30	조사중	-
스테인레스 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7312.10.10	세이프가드	'10.2.5	조사중	-
아연도강선	7217.20.10	세이프가드	'10.1.21	조사중	-
비도금강선	7217.10.10	세이프가드	'10.1.19	조사중	-
열연코일	7208.10/25/26/27/36/37/38/39/90	반덤핑	'09.4.8	조사중	- Posco, 현대제철 대상 조사 중

[일본]

□ 수입규제 내역

- 2010년 12월 현재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는 아래 1건임.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단 섬유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 피소기업 : 삼영합섬, 대양산업, 휴비스, 성림, 삼흥 - 세율 : 삼흥 6.0%, 기타 13.5% - 2007년 7월 과세기간 연장 (2012년 6월28일까지)

[중국]

□ 수입규제 내역

〈대한 수입규제 현황〉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99.4.16	'00.8.25	관세율 : 13~46% '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99.6.17	'00.12.18	'06.4.8. 관세부과 5년 연장 관세율 : 포철 11%, 인천제철 4%, 삼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3	이염화페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4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재심 개시('08.8.6) '09.8.5.부 관세부과 5년연장
5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 관세부과 5년 연장
6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08.9.4) '09.9.8.부 관세부과 5년 연장
7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6~76% 일몰재심개시 ('08.9.29~09.9.29) '09.9.29. 관세부과 5년 연장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8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개시('08.11.22~'09.11.21) '09.11.21 관세부과 5년 연장
9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 &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10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10.11.30. 관세부과 4년 연장
11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 7~46% '07.4.16 한국 오프매직 재심신청 '08.4.14 한국 오프매직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개시('10.1.1~'11.1.1)
12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 28~184% 일몰재심개시('10.6.17~'11.6.17)
13	헥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14	ECH Epichloro 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15	폴리우레탄	5402.49.2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TK 화학(주)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16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 &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일부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17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9.	관세율 : 5~51.6% LG 화학 : 5% 금호 P & B : 4.3% (금호에 한해 '10.9.10일부터 관세를 8.9% → 4.3%로 인하) 기타 한국기업 51.6%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8	유기실리콘 중간체	2931.0000 3824.9099	반덤핑	'08.5.28	'09.5.28	'09.5.28일부 반덤핑관세 부과(한국기업 25.1%)
19	아디프산	2917.1200	반덤핑	'08.11.10	'09.11.1	'09.11.2일부 반덤핑관세 부과 Rhodia Polyamide CoLtd 5.9% Asahi Kasei Chemicals Korea Co. 5.0% 기타 한국기업 16.7%
20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보증금 2.0~20.1% 삼성석유화학.KP화학2.0%, 효성2.6%, SK유화11.2%, 삼남석유화학3.7%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보증금 2.0~20.1% 삼성석유화학.KP화학2.0%, 효성2.6%, SK유화11.2%, 삼남석유화학3.7%

- 상무부는 한국산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2010년 2월 12일과 8월 12일 각각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내림
- 기업별로 2.0%에서 11.2%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HS코드 2917.3611에만 부과)

○ 일몰재심(2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10.1.1. 일몰재심 착수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10.6.17. 일몰재심 착수

○ 관세부과 5년 연장(2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일부 관세부과 5년연장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10.11.30일부 관세부과 4년 연장

○ 관세 인하(1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9.	금호 P&B의 관세를 '10.9.10일 부터 8.9% → 4.3%로 인하

[캐나다]

□ 수입규제 내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 강관	7306.3010 /3090/5000 /6090	반덤핑	'03.3.21	'03.12.13	-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율 89% - '08.12.11 수입규제 종료재심 결과, 수 입규제 지속 결정
동제 관련결구	741210, 741220	반덤핑	'06.6.8	'07.02.19	- '07.2.19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율 104% - '07.8.16 덤핑률조정 : 정상가를 제출 한 정우금속을 제외한 모든 수출업체 에 수출가격의 242% 반덤핑 관세 부과 - '10.4.1 재조사 결과 발표 : '09.11.12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동제 관연결구					공고된 재조사 결과, 정우금속을 제 외한 모든 수출업체에 수출가격의 242% 반덤핑 관세 부과 - '10.12.6 재조사 개시 공고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CBSA)은 2010년 12월 6일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 관연결구 (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개시 공고
- 해당 수출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2011년 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특별수입규제 법안에 따라 242%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태국]

☐ 수입규제 내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200032-7 2202090056	반덤핑	'02.2.22	'09.7.16 반덤핑 해제	-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여부 심사중 - 현재 0% 부과
열연 철강 및 열연 코일	7208, 721113, 721114, 721119	반덤핑	'02.7.22	'10.6.21	- 반덤핑 지속 결정 - 포스코 0%, 기타 13.96% - 기간 : 2010.7.1-2014.7.1

자료원 : 태국 상무부

[터키]

□ 수입규제 내역

- '10.12월 현재 6개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	5407 일부	반덤핑	2000.11.1	2008.08.1	해동 38.61%, 대광, 동흥무역, 동성 무역, 덕동, 현마무역, 승우무역, 서광, 서광무역, 성광, 선문, 을화 14.64%, 최고마진 40.0% - '07.2.11 반덤핑재심연장 조사개시 - 2008.8.1 연장 확정 - 2013.8.1 종료 예정
금속드리사	5605.00	반덤핑	2004.2.7	2004.9.24	관세율 U\$2.2/kg - 2009.9.17 재심조사 개시 - 2010.7.21 연장 확정 - 2015.7.21 종료 예정
PET	3907.6020	반덤핑	2004.12.9	2006.1.27	관세율 6.5% - 2011.1.27 종료 예정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1999.3.4	2006.9.8	선경 11.9%, 삼양사.고합24.6% - '06.9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모든 업체 10%) -2011.9.8 종료 예정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1998.11.27	2006.5.18	- 관세율:5.2~10.9% - '04.11 만료후 재조사 - '06.5.18 반덤핑관세 재부과 한국합섬 5.7%, 효성 5.2%, 동국무역 5.5%, 휴비스 5.5%, 도레이새한 5.5%, 기타 10.9% - 2011.5.18 종료 예정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1999.3.4	2006.12.21	관세율:33.7% - 2011.12.11 종료 예정

자료원 : 터키대외무역청(www.dtm.gov.tr)

- 이외 터키 정부는 8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중임

〈세이프 가드 조치 현황〉

HS CODE	제품명	규제종류	규제내용		
			1. Period	2.Period	3. Period
9003.11 9003.19	Frames and Mountings Spectacles	세이프 가드	3\$/item 2008.3.5~2009.3.4	2.85\$/item 2009.3.5~2010.3.4	2.70\$/item 2010.3.5~2011.3.4
42.02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세이프 가드	3\$/kg Max. 5 \$/item 2008.4.8~2009.4.7	2.90\$/kgMax. 4.75\$/item 2009.4.8~2010.4.7	2.80\$/kgMax. 4.50\$/item 2010.4.8~2011.4.7
8509.40. 8509.80. 8516.31. 8508.11.	Certain Electrical Appliances	세이프 가드	5-8\$/item	4.5-7\$/item	4-6\$/item
5205.12,5205.22, 5205.32,5205.42	Cotton Yarn	세이프 가드	15% max.1.0 \$/kg- min 0.35 \$/kg	14%	13%
8508.11/19	Vacuum Cleaner	최저수입 가격지정	34\$/item 2009.08.10~2010.08.09	33\$/item 2010.08.10~2011.08.09	32\$/item 2011.8.10~2012.8.9
8516.40.10.00.00	Steam Smoothing Irons	세이프 가드	3.5\$/item 2009.8.10~2010.8.9	3.25\$/item 2010.8.10~2011.8.9	3\$/item 2011.8.10~2012.8.9
64.02	Footwear	세이프 가드	1.70\$/pair 2009.8.10~2010.8.9	1.65\$/pair 2010.8.10~2011.8.9	1.60\$/pair 2011.8.10~2012.8.9
64.03			2.55\$/pair 2009.8.10~2010.8.9	2.50\$/pair 2010.8.10~2011.8.9	2.45\$/pair 2011.8.10~2012.8.9
64.04			1.70\$/pair 2009.8.10~2010.8.9	1.65\$/pair 2010.8.10~2011.8.9	1.60\$/pair 2011.8.10~2012.8.9
8711.10./20/30	Motorcycles	세이프 가드	170-255\$/item 2009.8.15~2010.8.14	165-250\$/item 2010.8.15~2011.8.14	160-245\$/item 2011.8.15~2012.8.14

자료원 : 터키대외무역청(www.dtm.gov.tr)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중으로 2009.9.24 종료예정이었던 한국산 금속드리사 (HS 코드 5605.00)의 경우 2010.7.21일자로 연장이 확정됨

- 터키 정부는 2010년 11월 현재 재심조사를 포함하여 총 7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의 44%에 불과함
- Vacuum Cleaner, Steam Smoothing Irons, Footwear, Motorcycles 는 2010년 중 세이프가드 조치가 2012년까지 연장됨.

[파키스탄]

□ 대한수입규제 내역

- 파키스탄의 대한 수입규제로는 반덤핑 조치이 4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2건이 조사 중임.
-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나 Safe Guard 조치는 없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resin	3904.1090	반덤핑	2004.6	2005.2.24	덤핑마진 : 40.18% 당초 2009년 10월 종료예정, 향후 5년간 연장 결정 ('10.10)
Polyester Filament Yarn	5402.3300 5402.4300	반덤핑	2005.11	2006.3.17	덤핑마진 : 기타 한국 6.92% / 당초 2010.11월 종료예정 덤핑관세 연장 검토 시작('10.12) TK케미칼-이의제기 개별조사신청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10	반덤핑	2006.6	2007.2.9	덤핑관세 한국 : 2.14% 인도네시아 : 5.04% 태국 : 4.34~10.26%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2009.5	2010.9	덤핑관세 한국 7.36% 중국: 11.84% 브라질 6.17% 인도네시아 : 5.87% 대만 : 27.28%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4810.9200 4810.9900	반덤핑	2009.6	잠정판정 2009.12.21	잠정덤핑관세 한국 : 한솔 3.12%, HM사 6.27% 기타 한국 20.79% 인도네시아 : Fajar 10.15%, 기타 11.17% 중국 : 18.01, 대만 10.51%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2009.8	잠정판정 2010.9	잠정덤핑관세 한국 : 14.77%, (한솔, OCI 미부과) 벨기에 9.2%~84.48% 태국 : 3.82%~25.2% 인도네시아 25.2% 중국 : 71.93%, 대만 : 35.61, 터키 : 25.61%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2010년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09년 제소된 Phthalic Anhydride(무수프탈산)에 대한 조사는 2010년 9월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져 한국에 7.36%, 브라질 6.17%, 중국 11.84%, 인도네시아 5.87%, 대만 27.28%의 최종 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짐
- 2009년 6월 개시된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일면 코팅 이중 판지)에 2009년 12월 한국 한솔 3.12%, HM사 6.27%, 기타 20.79%의 잠정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고 인도네시아 Fajar사 10.15% 기타 인도네시아 11.17% , 중국 18.01%, 대만 10.51%의 잠정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 후 조사가 진행 중임.
- 한국산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는 2009년 8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2010년 9월 잠정 덤핑판정이 내려졌으며 한국의 한솔과 OCI사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2% 미만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으며 기타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14.77%의 잠정관세 부과가 결정됨.
- 2004년 10월부터 부과가 결정된 PVC 레진의 경우 당초 2009년 일몰제 적용으로 부과가 종료되어야 하나 파키스탄 정부의 일몰(종료)검토 후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

- 2005년 11월부터 부과된 Polyester Filament Yarn의 경우 2010년 11월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어 부과가 종료되어야 하나, 관련 국내 산업의 연장요청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검토가 개시됨('10.12월). 한국의 TK 케미칼사는 2010년 10월 덤핑방지관세를 별도 적용을 위해 개별조사를 신청하였음.

[필리핀]

☐ 수입규제 내역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Ceramic Tiles	6907 90 6908 90	세이프 가드	'07.9.3	'07.11.28	- Kg 당 Php 1.80 (US\$ 0.4)
판지 (Testliner Board)	4805 2400 4805 2510 4805 2590	세이프 가드	'10.5.29	'10.11.24	- MT 당 Php 1,342 (US\$ 29.8)
Float Glass	7005 2190 7005 2990	세이프 가드	'09.9.2	'09.11.20	○ Clear Float Glass - 톤당 Php3,583.83(US\$75) ○ Tinted Float Glass - 톤당 Php4,526.94(US\$94)

* Steel Angle Bar도 세이프가드가 적용 중이나 한국은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제외

☐ 2010년 수입규제 변동내역

-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사가 '10. 5. 25에 시작되어 '10. 11. 24에 최종 판정이 결정됨

[호주]

□ 수입규제 내역

- '10.12월 현재 총 1개 한국산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10개(06.6) → 9개(06.12) → 8개(07.5) → 6개(08.4) → 5개(08.8) → 4개(08.12.5)
 - 2개(09.12.14) → 1개(10.03.23)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백상지	4810.13.90/56 4810.19.90/57 4810.29.90/64 4810.99.00/80 4810.99.00/85	반덤핑	'04.12.15	'05.7.28	2010.05.7 재심 결과 관세 부과 5년 연장, '15.7.27 종료 예정.

□ 2010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발효 중이던 PVC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10년 3월 23일부 종료
- LLDPE(초저밀도폴리에틸렌) 덤핑 심사 진행되었으나 반덤핑 조치 없음
 - 2009년 12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바 있으나 '10년 6월 30일 재조사 개시
 - 관세청 조사 결과 덤핑으로 평가, 반덤핑 조치 재개 권유한 바 있으나
 - '10년 12월 6일 발표한 최종 심사 결과에서 덤핑은 인정되나 호주 시장에 끼친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 조사 종료

[EU]

□ 수입규제 현황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삼문형은 제외 2011.9.1 종료예정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11/9 319/9930/9 990	반덤핑	'01.6.1	'08.10.16	한국산 44% ('12.8 종료예정)
PET 칩	39076020 39076080	반덤핑	'05.12.1	'07.2.28	KP케미컬, SK케미컬 : 무협의 기타 148.3Euro/t '12.2.28 종료 예정
철강제로프와 케이블	7312.1081/1 083/1085/1 089/1098	중국산 우회덤핑	'09.8.12		종료재심 진행 중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덤핑	'06.4.21	07.1.19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관련 서류를 EU측에 제출기로 함

□ 2010년 대한 규제 변동 사항

- 2009년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한 덤핑조사 완료, 덤핑 협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됨
 - 이사회시행규정 1105/2010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EU) No 1105/2010, 2010.11.29일)을 통해 EU는 2009년 9월 8일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산과 대만산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해 덤핑조사 완료를 발표함.
- 2000년 말부터 부과되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res)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0년 3월 18일 종료됨.
-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현재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이미 규제 대상인 PET 칩의 중간재심이 진행 중임.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품목은 없음.

2. 對韓 수입규제 전망

가. 총괄

□ 신흥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우려

- 2010년 경기회복세에 따라 신흥경제국가에서는 물가상승, 자국통화 강세와 더불어 수입증가세가 지속
- 2011년에는 경기회복이 구체화 되어 수입증가와 함께 각국 산업계의 보호요청이 늘어나 수입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인도 등 2008년 경제위기와 함께 수입규제조치를 과도하게 적용하였던 국가에 비난이 증가한 바 있고, 이미 각국의 피해품목에는 반덤핑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급격한 규제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철강, 화학, 자동차와 부품 등 주력수출 품목에 견제 지속 전망

- 미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철강 생산국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도 한국산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수입규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장기적인 수입규제는 약화 예상

- 한국이 미국, EU, 페루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입규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원산지 규정 준수와 같은 문제가 협상 대상국과의 주요 통상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큼.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 공화국]

□ 통상정책 방향

- 남아공은 25%이상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남아공의 대한 수입액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56.35%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음. 또한 '95~'09 간 남아공은 한국산 제품에 17건의 반덤핑 조사를 벌인 바 있고, '02년 반덤핑 원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에 대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어 추가규제 우려가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승용차 (HS code : 8704)의 경우 180%의 증가를 보였는데 지속적인 한국산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한국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펌프, 제지, 철강관 등이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규제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

□ 국내산업 지원정책 강화

- 2009년 6월 19일 러시아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위기대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자국 내 주요수출기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225억 달러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출업체 자금지원, 자동차 제조업체 지원 등 총 10개 분야의 국내산업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추진

- 러시아 내에 2009년의 경우 총 600개 제품군에 대한 관세변동이 있었는데, 이 중 350개 제품군의 관세율이 상승함.
- 관세가 오른 주요 산업분야는 자동차산업, 농기계산업, 비철금속 야금 및 기계공구 등이며 농업분야의 경우 쌀, 치즈, 유제품, 식물성 기름 등의 관세가 상승함. 이와 같은 경우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취해진 조치임.

□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

- 경기침체로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 증가
 - 폴리아미드 산업사, 폴리머 코팅 철 평판 압연, 니켈함유 스테인리스 평판 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는 등 무역규제 움직임이 뚜렷해짐.
 - 최근 러시아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과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인상 등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 수입 금지 조치
 - 러시아는 2009년 2월 10일 미국의 10개 육류 회사를 상대로 러시아 가축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이 조치로 외국 돼지고기, 가금류 생산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함. 그러나 최근 8월 미국 주 중에서 육류 수입금지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남았던 플로리다 주로부터의 육류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육류 수입금지는 점차 풀려가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구제역, 2004년 조류독감이후 육류, 가금류(계란 포함), 어류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나, 2008년 11월 6일 이후 러시아 농림수산 감리기관을 통해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한 8개 회사는 현재 돼지고기(4개사)와 어류(4개사)를 수출하고 있음.

□ 통관검사 강화 등 비관세장벽도 강화 움직임

○ 철금속, 화학 제품류 수입 통관 검사 강화

- 2009년 4월 이후 연방정부가 반위기 대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수입물품의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금속, 화학제품류 수입 통관 검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음. 동 제도는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위생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로는 자국 철강, 화학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한국의 한화화학의 경우 광 Cable 및 전력 Cable 표피 제조용 PE 컴파운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2009년 언더밸류가 의심된다 하여 통관을 시키지 않았던 사례가 있음.

○ 수입 휴대폰 통관 전수검사 실시

- 정부가 2009년 6월 19일 수입규제 조치 강화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로 수입되는 휴대폰의 경우 세르메체보 공항 세관 및 도보제도보 공항 세관에서 기존에는 1박스당 1개 정도씩 랜덤 조사를 하였으나 전화기, 충전기, 배터리, 메모리 카드 등이 무게 등 러시아 기술규격에 맞는지 모든 휴대폰을 다 열어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후 삼성, 엘지,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수십만 대에 달하는 수입휴대폰이 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막대한 물량의 전수검사 실시로 휴대폰 통관이 10배나 느려지고, 물품이 세관 창고에 오랜 시간동안 붙들려 막대한 창고 보관료를 물고 있음. 삼성전자의 경우 기간 중 30만 달러의 창고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음.
- 2009년 8월 중순부터 전수검사의 수위를 약간 낮춰 전체 물량의 30% 정도만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협의되었으나 여전히 수출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

[말레이시아]

☐ 최근 수입 규제 동향

○ 기술 규제 강화

- 철강제품은 품질표준 적합여부를 나타내는 인증(Certificate of Approve)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점진적 강제표준 도입 예정
- 점진적인 중고 부품/상업용 차량 수입 금지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수입규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멕시코]

☐ 통상정책 방향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대외무역 시장 개방으로 요약됨. 평균 관세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멕시코에서 임가공을 통한 미국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음.

[미국]

□ 보호주의 움직임 여전

- 오바마 행정부, G20 정상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 지난해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키면서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재를 미국산만 사용할 것을 명기하고 관용차 미국산 구매하도록 지시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의 수출확대와 함께 불공정 교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위한 노력 지속
 - 2010년 10월 15일, 중국의 그린에너지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2010년 10월 22일 고품질 그래픽인쇄에 사용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産 코팅종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발표하는 등 무역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잇따른 시행
- 미 무역위원회(ITC) 소송건수 증가추세
 - 외국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한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미 무역위원회의 소송건수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청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 ※ 2006년 74건, 2007년 84건, 2008년 119건, 2009년 118건
- 최대 대미교역 흑자국인 중국과 위안화절상을 비롯 곳곳에서 통상마찰 심화
 -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타겟이 되어왔으며, 2009년 상반기 미국에 의해 제소된 반덤핑 사례 21건 중 13건 중국에 대한 것임.
 - 2009년~2010년간 미-중간 지적재산권, 출판권,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세가지 주요 분쟁이 WTO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최근 원재료수출, 상계관세, 가금류 수입, 타이어 세이프가드 등의 네 가지 분쟁이 현재 WTO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

□ 통상정책 방향

-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로 보호무역기조 다소 완화 예상
 - 11월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던 이전과 달리 보호무역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실업률이 장기간 9%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여론도 자유무역에 호의적이지 않아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수출확대전략 지속 추진으로 통상마찰 증가 예상
 - 올해 발표한 Trade Policy Agenda를 통해 5년 내 수출을 두 배로 증가시켜 추가로 이백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미국의 수출증가를 위해 주요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무역활동의 감시와 권리집행을 강화할 전망.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문제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중국과의 마찰 지속될 전망
-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와 FTA 의회비준 추진
 - 올해 12월 한국과의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내년 상반기 파나마, 콜롬비아와 함께 한미FTA 의회비준 추진계획 밝히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의회비준, 하반기 발효가 예상됨
 - 미 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수출이 연간 100억 ~ 110억 달러 증가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환경, 위험물질 규제를 통한 회색장벽 강화 우려
 - 2010년 미국 행정부는 화재에 관한 우려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리튬이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의료기기 등 많은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력수출제품에 타격이 우려됨.

-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2011년부터 54인치 이하 TV를 대상으로 구형보다 에너지효율을 33% 이상 개선하지 못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의 에너지, 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한국제품에 우회적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수입규제 지속 예상

- 현재 수입규제 품목은 철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이 값싼 수입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철강 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임.

○ 식품안전법안 통과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 기존에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20% 가량이 수입산이고 그중 1%의 식품만이 FDA의 검사를 받았으나, 동 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수입산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될 전망
- 동 법안 발효 시,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외 식품가공 공장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됨

○ 반면 한미 FTA 체결로, 협상발효 시 대부분 품목 관세 철폐예정

- 올해 말 타결된 한미 FTA가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 의회비준에 성공하고 하반기 발효된다면 그에 따라 추후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

[브라질]

□ 자국통화 강세로 수입급증

- 최근 수년간 헤알화 대비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 시장에는 수입제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수입제품의 지나친 범람을 막기 위해 반덤핑 조치, 세이프 가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올해 1월~10월간 브라질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8% 증가
- 다량의 수입제품이 브라질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분야로는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제화제품 등이 있으며 동 분야 제품들의 대부분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국내 철강제품 수요 폭증으로 인해 수입산 제품이 다수 유통 되면서 국내 철강업체 Usiminas는 한국, 북한, 스페인,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대만, 터키 산 철강제품을 덤핑혐의로 제소한 바 있음.
- 브라질 정부가 주로 적용하는 수입규제는 추가관세 부과이나 최근에는 라이선스 및 품질 인증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를 통해서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정책 방향

- 브라질 정부는 또한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하에 수입증가에 대한 다수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최근 수년 동안 브라질 경제 호황, 달러 가치 하락 등 다수 요인으로 인해 중국제를 비롯한 외국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룰라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보다는 남남협력 및 대 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룰라의 뒤를 이어 브라질을 이끌어 나갈 지우마(Dilma)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남미대륙을 리드하고 있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끊임없는 수입관세 인상 등 자국 무역보호 조치에도 비교적 대범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별다른 보복조치 등 맞대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최근 수출증가로 수입규제 조치가 우려되고 있는 한국 제품으로는 철강제품(후판), 니트릴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제품 등으로 밝혀졌으며 동 제품들은 이미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2~3년간 수출이 급증하여 브라질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한동안 덤핑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하지만 브라질 언론은 연일 “수입차 4대 당 1대가 한국산”,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은 한국산 자동차”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불편한 심기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 규제 우려도 일부 존재함.

[아르헨티나]

□ 수입규제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기본원칙 아래, 수입관리 제도로 네거티브시스템 (예외적으로 명시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평균 관세율 18%로 관세장벽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자동수입승인제도, 사전수입허가제도, 수입최저가격제 등의 실시로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2009년 말부터는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전자제품 국내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법(Tierra del Fuego 특별법)을 시행, 핸드폰, LCD, 에어컨 등 다수의 전자제품을 현지 보세지역인 Tierra del Fuego 지역에서 생산해야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해외 생산 전자 완제품의 경우 통관절차를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어 수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놓았음.

□ 통상정책 방향

- 일반적으로 수입규제는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적용되는 국제적 관례와 달리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극단적인 국내 산업보호정책 시행으로 인해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등 외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나, 현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및 수입규제 위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내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 대선 때까지는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0년 2월 12일부터 한국 산, 태국 산, 베트남 산, 말레이시아 산 에어컨(용량 26000 BTU이하) 덤핑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 최근 현지 자동차 금형제작업체가 한국산 금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기사가 현지 일간지에 크게 실린 적이 있고 금형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산업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용 금형에 수입규제를 적용 시킬 가능성이 큼.

[우크라이나]

□ 수입규제 개요

- 2010년에는 추가수입관세와 같은 조치는 도입되지 않았음.
 - 2009년에는 자동차, 냉장고 등 주요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도입했다가 교역상대국들의 반발과 WTO 규정 위반 가능성으로 6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음.
 - 하지만 냉장고, 합금철, 비료, 유리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중 냉장고, 합금철 등의 경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인 관계로 영향이 컸음.

- 특히 냉장고의 경우에는 우리의 대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공동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사건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전통적인 수입규제 이외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구제역이 전염되기 쉬운 한국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이전에도 관련 제품들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실적이 전무하여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음.
-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입규제 추세는 규제 종류를 과거 반덤핑 위주에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위주로 변하는 모습을 보임.

□ 통상정책 방향

- 우크라이나는 2009년 -15.1%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뒤 2010년 4%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IMF의 재정적자 축소 요구가 2011년에는 GDP의 3.5% 수준으로 강화되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출 축소와 함께 재정수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이런 차원에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음.
- 특히 2009년에 현지의 극심한 경기침체(경제성장률 -15.1%)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2008년도 수입했던 재고물량 처리에 부심하면서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76%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도 재고물량 해소와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1~10월 기간 58% 증가했고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합성고무 등은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예상됨.
-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통계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8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0년에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냉장고(185%), 진공청소기(140%), 무선전화기(521%), 칼라TV(347%), 화학기계(512%), 합성고무(10,909%), 건설중장비(809%), 화물자동차(1712%), 필름류(217%) 등이 있음.
- 이중 냉장고는 이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임.

[이집트]

□ 통상정책 방향

- 2011년도 이집트의 통상정책 방향은 2010년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 내용으로는 이집트는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산업화 육성에 따라 과도한 무역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제 강화 지속 및 산업 보호조치 유의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 인상 등 다양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판 등 현지 생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중국산 소비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배경으로 현지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일부 품목의 경우 이집트 로컬 생산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까지 특별히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0년 10월 기준 한국산 평판디스플레이(MTI : 8361)이 전년 대비 365%가량 증가한 실정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규제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됨.

[인도]

□ 수입규제 개요

- 소수 국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 중국이 최다건수 기록
 - 최근 5년내 반덤핑 제재가 가해진 사례*는 총 39개국 대상 308 312건(동일 품목 복수국 제소건을 단일 제소건으로 환산시 총 132건)으로, 상위 10개국에 241 243건, 상위 20개국에 280 287건이 집중되는 등 소수국가에 반덤핑 제소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대만, 한국, 태국, 미국, EU가 각각 91건, 28건, 25건, 18건, 17건, 17건으로 가장 주요한 반덤핑 제재대상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덤핑 제재가 이뤄지고 있음.
- 산업용 원부자재 중심의 수입규제
 - 각종 화학/석유화학 품목이 전체 상위 10대 반덤핑 제재 품목 대상 120건 중 94건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어, 대량 수입이 되는 원부자재가 반덤핑 핵심 타겟 품목임을 알 수 있음.
 - HS 4단위 기준으로 상위 10대 주요 반덤핑 제재 품목 또한 합성 필라멘트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대 품목 모두가 화학/석유화학 품목으로 해당 10대 품목 전체 제소건수 45건 중 40건으로 89%를 차지함.
 - 반덤핑 제재는 주로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으면서, 강력히 피해를 요청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업종별 협회가 있고, 수입규모가 크고 증가율 또한 높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주요 제재 품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화학 및 석유화학, 전자제품, 철강, 섬유 산업은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한 바 앞으로도 해당 품목의 반덤핑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다소 주춤

-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급증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2007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2010년에도 작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증가 추세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의 반덤핑 제재 감소 현상은 세이프가드 활용 증가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2009년 중 12건 발동, 이중 6건 단기간 내 철회)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활용한 국내산업 보호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없이도 반덤핑 제재 건수의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바, 원부자재 해외 수입이 필요한 산업계를 고려해서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덤핑 제재는 특정 국가 및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진행되는 만큼 제재대상국의 피해가 두드러는 바, 충분한 검토 없는 반덤핑 조사에 대해 대상국의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덤핑 피해에 대한 판단에 논란이 생길 경우에도 대상국의 반발 및 WTO 제소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지양한 것으로 분석 (급증하는 제소 건수로 인해 인도 정부가 반덤핑 제재를 국내산업 보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악명이 높아진 바 있음.)
- 반덤핑 제재의 경우 조사 착수 이후 잠정관세 또는 확정 관세 부과까지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지만, 세이프 가드의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유용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면 1~3개월 내 취하)

□ 통상정책 방향

○ 단순 수입급증 품목 아닌, 원부자재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재 예상

- 대한 반덤핑 품목 중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CRT 모니터, CD-R 이외에는 제재 받는 품목이 없고, 전세계 대상으로도 CRT 모니터, CD-R, DVD-R 등의 일부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재 품목이 없음.

- 그러나 이는 인도 전자산업의 성장 단계가 낮은 수준에 있고, 인도 로컬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들은 외국 기업들도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인도 기업들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어 수입품과의 경쟁군이 다변화되면 전자제품군에서도 다양한 반덤핑 제제가 예상됨. (각종 백색가전제품 분야로 인도 국내 전자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치열하게 넓혀가고 있음.)
-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인도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지속적인 반덤핑 제제 확대가 예상됨.

[인도네시아]

☐ 통상정책 방향

- 2010년 시행된 중국-ASEAN FTA로 인하여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선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할 정책 추진 전망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고자본재 등에 대한 비관세 적용 유지 전망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수입 확대 방안 중의 하나로 관세수입을 증가시킬 계획. 따라서 통관 시 불필요한 서류 등 각종 행정 간섭 발생 가능성 다대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 정부는 2010년 1월 'Uncoated wood free printing paper'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를 당함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동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동 Anti-Dumping를 취소하거나 Anti-Dumping을 처음부터 없애는 양국 간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일부 업계 종사자들은 한국 정부가 Anti-Dumping 판정을 내릴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산 Art Paper에 대한 보복 수입관세를 부가할 것이라고 언급
- 한국으로 수출되는 'Uncoated wood free printing paper'의 수출량은 인도네시아 전체 'Uncoated wood free printing paper' 수출량의 2.6%에 불과하여 인도네시아 업계는 한국측의 Anti-dumping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철강업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철강제품에 대한(국가품질 인증(SNI)강화와 반덤핑 조치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
- 2011년 건설경기 호조 전망으로 철강 제품 수입이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 따라서 인도네시아 철강 업체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와 자국산 철강 보호를 위해 SNI를 강화할 전망

[일본]

□ 통상정책 방향

- 일본-인도 EPA 협상 완료,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PP) 추진, 페루, 호주와의 EPA 타결 등 2010년 들어 적극적인 통상 개방정책을 취함.
-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실현 등을 골자로 한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는 등, 이러한 정책 추진 노선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 필요
-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일본에서는 2010년 1월 이후 소, 돼지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의 닭 및 닭고기 수입에 대한 일시 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 일본 국내에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중국 멜라민 문제 등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졌으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된 바 있음. 2011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만큼 식품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일본인들이 전세계 소비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즐겨먹는 참다랑어에 대한 태평양 어획 제한을 일본 정부가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 정부는 일본내 참다랑어 수입업체에 대한 수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중국]

□ 수입규제 개요

○ 신규 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4건과 7건을 기록
- 이는 '신규'보다는 '연장'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수단 동원 가능성

- 중국은 외국계 대형 투자기업들이 저가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 세번 변경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은 한국산 수입이 많은 무한계도 부품(굴착기용 바퀴 부품)의 세 번을 변경해 관세율을 5%(굴착기 부품)에서 12%(일반체인)으로 인상 조치한 바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년 간 소급 적용하기도 함

□ 통상정책 방향

- 중국 정부는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
 -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또는 환급률 인상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음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임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1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육성, 수출품의 내수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도 나올 것임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개방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임
 -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의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출판 등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에 나설 수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자동차, 가전 등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써 지속적인 주의를 요함

[캐나다]

□ 수입규제 개요

○ 보건위생 규제 강화

- 2010년 11월 캐나다 보건부는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외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물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납 허용 수치 적용한다고 발표
- 새로 적용되는 금지 조항은 3세 미만의 유아용 장난감에 0.009%의 납 허용 수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1 킬로그램당 약 90 밀리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 해당 제품은 주방용품을 제외한 유아용 젓꼭지, 젓병, 아기 턱받이, 빨대는 물론 납을 함유한 표면 코팅 재료를 사용한 어린이 가구, 장난감, 학습 장비 등을 포함
- 과거 소비자 안전규정에 의하면 납성분 0.06%를 초과하는 제품에만 정부의 강제 리콜 권한이 있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판매 및 수입 금지 권한은 납성분 0.009% 초과 제품으로 확대

○ 세계 최초로 Bisphenol A (BPA) 독성물질로 규정

- 2010년 10월 14일 캐나다 보건부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Bisphenol A (BPA)를 독성물질로 공식 규정하고, 규제 대상 물질 목록에 추가
- 캐나다 보건부는 국민건강과 관련해 Bisphenol A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 왔다고 보고, Bisphenol A의 위험성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제 마련 작업에 착수
- Bisphenol A의 인체 유해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적이 없으나,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유아용 젓병과 이유식 음식 캔에는 Bisphenol A 사용을 금지해 옴.

- 캐나다 통계청은 2010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Bisphenol A 함유조사 결과, 국민의 91%에서 Bisphenol A가 검출됐다고 발표
- 2010년 12월 현재 Bisphenol A 젯병을 금지하는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정도이며,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조를 금지하고 있고, EU는 2011년 초부터 Bisphenol A 젯병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 2010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2011년식 모델부터 미국 기준과 동일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적용
- 매년 규제강도를 높여 2016년까지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 153g/km로 규제
- 2011년식 생산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제조사별 고유 차량 기준에 의거하며, 이는 차량 크기에 의해 결정
- 2011년 식 모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는 초기배출 이산화탄소 1Mg 당 \$20 캐나다달러 가격으로 정부로부터 배출권 구매해야 함.

□ 통상정책 방향

○ 한-캐 FTA 협상 타결 가속화 전망

- 2010년 12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2011년 한-캐 FTA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 단, 캐나다산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WTO 제소 결과와 자동차 분야 협상이 최대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인 바, 한-캐 FTA 협상 타결이 2011년내 이뤄질지는 유동적인 상황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산 철강품목, 수입 급증에 따른 규제 확대

〈한국산 주요 철강제품 대 캐나다 수출현황〉

(단위 : US\$ 천)

HS Code	제품명	2009.1~9	2010.1~9	증가율 (%)
7210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32,139	37,607	17.0
7306	기타 철강 튜브 및 파이프	15,696	26,237	67.2
7308	철강구조물	10,106	15,599	54.4
합계		57,941	79,443	37.1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2010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산 주요 철강제품의 대캐나다 수출 합계는 2009년 동기간 대비 37.1% 증가한 US\$ 7,944만 달러 기록
- 특히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HS Code 7210)과 기타 철강 튜브 및 파이프 (HS Code 7306)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품목 중 각각 13위와 17위 차지
- 반면, 캐나다산 동일한 철강제품의 대 한국 수출은 2009년 동기간 대비 64.4% 감소한 US\$ 87만 달러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 캐나다는 '10.12월 기준 총 6개 중국산 철강품목에 대해 규제 중이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산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특히, 전통적으로 규제 대상이었던 한국산 철강 제품의 경우, 이미 구조용 강관이 규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무역 불균형도 심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터키]

□ 수입규제 개요

- 터키 경제가 작년의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서 터키의 수출과 수입이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작년보다 감소
- 반덤핑 신규규제 2009년 28건 → 2010년 11건으로 대폭 감소

- 터키정부는 현재 반덤핑 및 재심조사 등 3개국을 대상으로 7건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09년 16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
- 최대 피소국은 중국으로 총 6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외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임.
- 조사 진행 중인 품목을 살펴보면 유리섬유 보강재를 비롯하여 드릴, 타이어류 등 제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 통상정책 방향

- 터키 경제가 회복되면서 무역적자도 악화되어, 2010년 10월까지 63.2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36.4%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산업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및 설비 수입이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터키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소재 및 기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일부 섬유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요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최근 아일랜드에서 촉발되어 EU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의 추이에 따라서는 내년도 터키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터 FTA가 내년에 타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적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HS Code 6004.10)

- 2010년 10월 현재 대터키 수출 전년대비 121.3%증가
- 굴착기(HS Code 8429.52) : 2010년 10월 현재 대터키 수출 전년대비 300% 증가
- 트랙터(HS 8701) : 2010년 10월 현재 대터키 수출 전년대비 247.8% 증가

[태국]

☐ 수입규제 동향

- 태국은 금년도에 한국, 인도 등과 체결한 FTA 상품협정이 발효하는 등 수입 규제는 완화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또한 최근 수년간 반덤핑 제소의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태국이 반덤핑 제재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 건축자재에 한정되어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2011년에는 2010년 발효한 한-태 FTA, 한-인도 FTA가 정착될 예정으로 태국은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금년 세계경제 회복으로 7.9%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11년도 금년의 추세가 이어져 4.0%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태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은 2010년 1,88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5.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는 11.7%가 증가한 2,110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보임.
- 한편 태국의 수입은 2010년 1,755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33.5% 성장이 예상되며 2011년은 1,990억 달러로서 13.4% 증가가 전망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태국은 그동안 철강, 건축자재 등에 한정하여 반덤핑 제재를 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이 현재 반덤핑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은 중국산 시트르산(Citric)과 바닥용 세라믹 타일로서 각각 2011년 2월과 2011년 6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파키스탄]

□ 수입규제 동향

-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투자유출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8년부터 987개 비필수품, 사치품에 대한 규제관세 신설 등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 후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8년부터 부과되던 987개 비필수품에 대한 규제관세는 최소 15%~50% 부과가 계속 되고 있음.
- 2010년 IMF의 재정적자 축소요구에 따른 세수확대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General Sales Tax 의 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시 Special Sales Tax 명목으로 5% 내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반덤핑 등 수입규제 관련 법규 변경의 특이사항은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파키스탄 정부는 2009/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기존에 취해지던 각종 수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한편, 일부 고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를 단행함.

- 그러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유지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에 부과되던 사치품과 비필수품에 대한 규제관세는 지속되고 있음.
- IMF에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 세수확보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없던 특별 판매세를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등의 세수확대 방안을 취하고 있음.
- 또한 무역적자가 2007/08년 150억불에 이어 2008/09년도에도 126억불이 넘고 2009/10년 회계연도에도 110억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부터는 기존에 섬유, 화학, 비료, 농업 분야 등 주요 산업에 적용되었던 일반판매세 면세조치 적용이 정부 제정수입 확보를 위해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가격 인상과 기업의 현금흐름 악화로 전반적인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Pakistan Steel 에서는 National Tariff Commission(NTC)에 냉간압연, 열간압연, Galvanized 철강 제품에 대하여 보호관세 요청을 하였으나 NTC의 조사 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기존에 국산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에 대한 반덤핑 결정이 있었으며 2010년 11월 일몰제 적용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연장요청으로 2010년 12월 재조사가 진행 중임.

[필리핀]

□ 수입규제 개요

- 필리핀은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농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주의 경향을 띠지 않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음
-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 6개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옥수수, 설탕, 돼지고기, 가금류, 커피, 커피추출물 등이며 관세율도 20-25%에 이르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로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여건임.
- 다만, 자국의 산업정책과 일부 제조업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필리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첫째로는 필리핀 관세위원회(TC)가 2010.5.25일 제소된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해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Php1,342/MT의 safeguard Tax 부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적용환율 US\$1=Php45)
- 동 건은 '11.1.18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무역산업부(DTI)에서 부과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의 수입비중이 47%에 달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로는 필리핀 투자청(BOI)이 자국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확정단계에 있으며 현재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CMDP (Comprehensive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와 관련된 사안임.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세 번째로는 필리핀 농업부가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구제역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 2010년 12월 취해진 조치이며 한국 검역소의 최근 보고서를 전달받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호주]

□ 수입규제 개요

- 2010년 12월 14일 기준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총 18개 품목으로 지속 감소세에 있음.
 - 27개('04.12) → 28개('05.12) → 23개('06.12) → 22개('07.5) → 17개('08.11.30) → 17개('09.12) → 18개('10.12)
 - 수입규제 유형으로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부과가 2건(프랑스산 브랜디, 중국산 알루미늄) 이며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임.
- 알루미늄, 철강 및 철강관 등 관련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상지도 주요 규제 대상임.
-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다 수입규제 대상국(8개 품목) 이며 태국이 3건의 제재 대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백상지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스, 말레이시아, 캐나다, 러시아가 각 1건씩 해당
 - 그 외에 미국, 필리핀이 각 2건씩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통상정책 방향

- 호주 정부는 DDA협상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 협상노력을 증대
 - 현재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FTA협상 진행 중
 - 태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과 FTA 체결 완료
- 경쟁력 취약, 이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지재권을 강화
 - 2010년부터 자동차 관세율 5%로 인하(기존 10%)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입 장벽 완화 중
- 수입규제 수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최근 수년간 수입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호주 제조업 경쟁력 취약, 호주화 강세로 인한 수입 수요 급증, 주로 에너지 품목 수입으로부터 기인한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수입규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호주는 계속해서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으나 제소 자체는 개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상시 모니터링 필요.

[EU]

□ 수입규제 개요

○ 2010년 EU의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현황

- EU는 2010년 9월 말 기준 27개국 67개 품목에 대한 132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7개국 6개 품목에 대한 11건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시행 중임.
- 2010년 12월 4일 기준으로 2010년 중 총 44건의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중 15건이 신규 조사였고 11건이 만기 재심, 12건의 중간재심, 1건이 신규수출업체에 대한 재심, 4건이 우회조사, 1건이 세이프가드였음.
- 2009년에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 수는 6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4건으로 18건이 줄어 약 29% 감소함.
- 신규조사 개시된 15건 중 12건이 반덤핑조사이며 나머지 3건이 상계관세 조사였음.

○ 조치 부과 현황

- 2010년 12월 4일 기준 2010년 중에 9건의 반덤핑 잠정관세, 12건의 반덤핑 확정관세, 1건의 확정 상계관세, 1건의 잠정 상계상세가 부과되었으며, 1건의 반덤핑 확정관세 연장 조치가 이루어짐.

○ 대상품목 현황

- 신규조사 대상품목의 경우 15건 중 4건이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며, 이어 화학제품(4건), Coated fine paper(2건, 모두 중국산), 통신기기(2건, 중국산 Wireless wide area networking modems), 유리섬유(1건), Fatty alcohol(1건), 세라믹 타일(1건, 중국산) 순으로 여전히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주된 품목임.
- 특이할 만한 것은 2009년에 3건이었던 의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금년에는 전무하다는 점임.

○ 대상국가 현황

- 중국이 여전히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2010년에 신규 조사된 15건 중 9건이 중국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도(3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니아 각각 1건임.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는 중국산 WWAN(Wireless wide area networking) 모뎀에 대한 1건이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EU의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서 금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1.8%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임. 금년 10월까지 EU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이 982 십억 유로, 수입이 1090.3 십억 유로로 108.3 십억 유로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 EU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유로화의 위기까지 번져가는 상황에서도 Karel De Gucht 대외교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2010년 11월 초 중장기적으로 역외국산에 대한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강화되거나 악화되지 않고 안정세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즉 세계경제 침체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EU의 수입규제 조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동인은 EU의 반덤핑 조치의 약 35%가 중국산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EU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3국이 EU 역내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탄소관세 논의는 중단된 상태

- 탄소감축을 추진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움직임은 2010년 6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

- 탄소관세 부과안은 특히 프랑스가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강력히 로비활동을 전개했고 이태리도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는 반대입장을 보임.

□ 2011년 대한 수입규제 전망

- 최근 몇 년간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EU로부터 덤핑 제소와 조사를 당하는 경우에도 우리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덤핑 무혐의 판정 등을 이끌어내는 등 EU의 수입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1년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채널이 다양화되어 EU의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 충족 문제는 매우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또한 담합 등 EU 경쟁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2010년 들어 철강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는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제 제소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함.
 - 지난 2010년 11월 초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회복이 불분명한 유럽 철강시장에 하반기(2010년) 초부터 EU 역외산 철강 완제품(finished steel)이 크게 유입되어(8~9월 중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 유럽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 EUROFER에 따르면 EU 역외 수입 가운데 중국산이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hot-rolled coil의 경우 15% 정도였던 상반기 시장점유율이 7월부터는 25%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EUROFER는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의 역외 철강생산국들이 보호무역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제는 향후 철강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품질 검사나 수입가격 계산에 최소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유럽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 이에 대응 조치로 제3국 수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환경규제 강화 경향에 따라 일부 역외국의 대 EU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라벨 규정 강화로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 부착(에너지 라벨 등급은 A~G의 7등급으로 구분)해야 하는 동시에 냉동/냉장고, 식기 세척기, 세탁기 관련해서는 기존 A 등급에 상위 A+, A++, A+++의 3개 등급을 추가, 분리하여 이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간 에너지 효율의 차별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함.
 - 2010년 6월 18일에 REACH 규정 내 기존의 유독성이 매우 높은 물질(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리스트에 8개 물질을 포함시켜 현재 SVHC 리스트 물질 수는 38개로 확대됨. 2011년부터 동 리스트의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EU와 EEA(EU+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체는 유럽화학청에 통보해야함.
 - 배터리내 카드뮴 함량 제한 강화가 예상됨. Emergency/alarm 시스템과 의료기기 또는 cordless power tools 용 portable 배터리와 축전기에는 카드뮴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는데 휴대용 전자기기용 배터리와 축전기에도 카드뮴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검토 중임(이를 위해 집행위는 2010년 3월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첨 부]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0.12현재)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남아공	3	1	0	4
러시아	1	4(1)	0	5
말레이시아	1	0	0	1
멕시코	1	0	0	1
미국	10	0	4	14
브라질	4(3)	0	0	4
아르헨티나	4(2)	0	0	4
우크라이나	1	5(3)	0	6
유럽연합	5	0	0	5
이집트	1	0	0	1
인도	24(3)	2	0	26
인도네시아	2(1)	4(4)	0	6
일본	1	0	0	1
중국	20	0	0	20
캐나다	2	0	0	2
태국	2(1)	0	0	2
터키	6	8	0	14
파키스탄	6(2)	0	0	6
필리핀	0	3	0	3
호주	1	0	0	1
총 20개국	95(12)	24(8)	4	126(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품목별 대한 수입 규제 현황〉

(2010.12현재)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기타	계
남아공	1	2	0	1	4
러시아	4(1)	0	1	0	5(1)
말레이시아	0	0	0	1	1
멕시코	0	0	1	0	1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기타	계
미국	10	2	1	1	14
브라질	1(1)	3(2)	0	0	4(3)
아르헨티나	2	0	0	2(2)	4(2)
우크라이나	2(1)	1(1)	1	2(1)	6(3)
EU	2	2	0	1	5
이집트	0	1	0	0	1
인도	3(2)	18(1)	3	2	26(3)
인도네시아	5(5)	0	0	1	6(5)
일본	0	0	1	0	1
중국	1	17	1	1	20
캐나다	2	0	0	0	2
태국	2(1)	0	0	0	2(1)
터키	0	1	6	7	14
파키스탄	0	3(1)	2	1(1)	6(2)
필리핀	0	0	0	3	3
호주	0	0	0	1	1
총 20개국	35(11)	50(5)	17	24(4)	126(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국가별 규제 세부품목〉

(2010.12현재)

국가	규제품목	계
남아공	연선-로프-케이블, PET수지용기, 백상지, 리신	4
러시아	니켈함유 테인레스 평판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잠금장치 및 부속구(조사중), 스테인레스 식기류, 유리섬유	5(1)
말레이시아	인쇄용지	1
멕시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로우멜티드 제외)	1
미국	금속제 주방용품, PET필름, 스탠다드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철강판재류,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코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철강후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염화비닐, PC강선, 연벽사각파이프,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14
브라질	PVC,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후판)(조사중), 니트릴 고무(조사중),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조사중)	4(3)
아르헨티나	냉연강판, 아연강판, 종이롤(조사중), 에어컨(조사중)	4(2)

국가	규제품목	계
우크라이나	철강파이프, 성냥, 파일편물, 합금철(조사중), 광물성 비료(조사중), 냉장/냉동고(조사중)	6(3)
EU	양문형냉장고, 철강제관연결구류, PET칩, 철강제로프와케이בל, 실리콘	5
이집트	DOP (Diocetyl Phthalte)	1
인도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기타단사, PVC 서스펜션, 오프셋복사용 알루미늄판, 아크릴섬유,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가성소다, 페놀, 아세톤, 과산화수소, 석유화학첨가제류, CDR, 스테인레스 냉연강, 인산, 차아황산소다, 탄산칼륨, 유성관재폴리올, 나일론 필라멘트사, TV음극선관, 스타리엔부타디엔고무, 프로필렌글리콜, PVC페이스트, 스테인리스열연강(조사중), 폴리프로필렌(조사중), 스테인레스냉연강(조사중), 무스프탈산, 옥소알콜,	26(3)
인도네시아	비코팅인쇄용지, 기타철강제연선 로프 및 케이בל(조사중), 스테인레스 강제연선 로프 및 케이בל(조사중), 아연도강선(조사중), 비도금강선(조사중), 열연코일(조사중)	6(5)
일본	폴리에스테르단섬유	1
중국	폴리에스테르 필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이염화메탄, 아트지(동판지), 무수프탈산(PA), 합성고무(SBR), 폴리염화비닐(PVC), TDI, 페놀, 클로로포름, 광섬유,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핵산, ECHEpichlorohydrin, 폴리우레탄, 비스페놀A(BPA), 아세톤, 유기실리콘중간체, 아디프산, TPA	20
캐나다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	2
태국	스테인리스냉연강판(조사중), 열연철강 및 열연코일	2(1)
터키	폴리에스테르장섬유직물, 금속드리사, PET,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Frames and Mountings Spectacle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Certain Electrical Appliances, Cotton Yarn, Vacuum Cleaner, SteamSmoothing Irons, Footwear, Motorcycles	14
파키스탄	PVC resin, Polyester Filament Yarn, Polyester Staple Fiber, Phthalic Anhydride,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조사중-잠정판정), Hydrogen Peroxide(조사중-잠정판정)	6(2)
필리핀	Ceramic Tile, 판지(Testliner Board), Float Glass	3
호주	백상지	1
총 20개국		126(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1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작성자

◆ 통상조사팀	유성준 과장
◆ 키예프KBC	최현필 부장
◆ 쿠파라룸푸르KBC	정영중 부장
◆ 마닐라KBC	김군기 차장
◆ 상파울루KBC	황기상 차장
◆ 방콕KBC	박영선 차장
◆ 자카르타KBC	윤여필 차장
◆ 이스탄불KBC	옥종수 과장
◆ 모스크바KBC	김동묘 과장
◆ 카라치KBC	김한승 과장
◆ 워싱턴KBC	권오승 과장
◆ 토론토KBC	손호성 과장
◆ 도쿄KBC	최정락 과장
◆ 뉴델리KBC	이해인 과장
◆ 베이징KBC	문은혜 과장
◆ 멕시코시티KBC	엄기웅 과장
◆ 시드니KBC	이희연 과장
◆ 카이로KBC	김효근 과장
◆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심재상 과장
◆ 브뤼셀KBC	최광희 대리
◆ 요하네스버그KBC	김남희 대리

Global Issue Report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발행인		조환익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1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